

여
규

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기안자 | 인사과 파파파 방을호 | 전화번호 | 337 | 공보 | 필요 | 불필요 |
| 과파파 | 장인사과장 | 내무국장 | 계 | 부시장 | 시 | 장 |

계
조
3
의
함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협조자명 | 보임계장 | 보존 | 한 |
| 기년월일 | 65. 4. 9 | 시년월일 | 65. 4. 13 |
| 분류기호 | 서울특별시 | 통제관 | 시 |
| 유신조 | 수신처참조 | 발신 | 시 |

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기준 시달

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평정자 및 학
인자는 공무원 개개인의 상벌상황 및 근태상황을 평정에
참작토록 하였으나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다음 사항을
지시함으로 차기 평정시부터 이행에 철저히 기합시기
바람

1. 평정기간내 표창수상자는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
8조 (평정자의 분포비율)에 규정된 "가"에 해당되는
점수를 줄수 없다.
2. 평정기간내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
 - 가. 징직 감봉 처분을 받은자는 "우" 및 "양"
에 해당하는 점수를 줄수 없다
 - 나. 근신 및 견책 처분을 받은자는 "우" 에

215

213

548

별시

해당하는 점수를 줄수 없다.

3. 만약 평정 기간내 표창을 받고 - 징계처분도 받았을 경우에는 2항에 적용하여 평정할것

4. 평정기간내 훈계, 경고 기타처분을 받은자는 2회 이상일 경우 "우"에 해당하는 점수를 줄수 없다.

5. 평정기간내 무계결근 및 지참이 2회 이상이 있을 경우 "우"에 해당하는 점수를 줄수 없고 만약 무계결근이나 지참을하여 상기 2, 3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2, 3항에 준하여 평정한다.

6. 시무공무원 및 수도사용료 파징 사무에 종사하는자는 반드시 파징실적을 참고로하여 평정하고 기타기관에 있어서도 실적등을 참작하여 근무에 의하여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할것. 끝

수상처 A실4. A24-26 A형1-9. AIII. A사1-82-

참고: 우 40점 ~ 36점
 랑 35.5점 ~ 26점
 가 25.5점 이하.